

# 대학 발전기금 관리규정

개정 2019.09.16., 개정 2020.03.16. 개정 2022.03.04., 개정 2026.03.20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·부동산·유가증권 또는 연구업무용 물품, 수목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.

## 제3조 (기금의 종류)

기금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① 일반기금 :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금
- ② 지정기금 : 기부자가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

## 제4조 (기금의 사용)

- ① 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하여 교육용 시설·기자재의 확충, 학생 장학금, 우수교원 초빙, 우수학생 유치, 교육과정 개발, 교원의 연구비,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 본교 교육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지정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## 제5조 (위원회)

-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  1. 기금의 관리·운용계획
  2.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
  3.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
  4.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
  5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② 위원회는 본교 교직원 또는 동문회 임원, 학부모, 본교와 산학협력이 돈독한 기업의 임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글로벌 대외교류처장,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개정 2019.09.16., 2020.03.1., 2022.03.04., 2026.03.20.>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주관부서의 직원

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#### 제6조 (기금접수 및 관리)

- ① 모든 기금의 접수는 대외교류팀에서 총괄하고 입·출금관리는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<개정 2019.09.16., 2026.03.20.>
- ② 수증물품은 대외교류팀과 소관부서가 상호협의하여 인수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후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9.09.16., 2026.03.20.>
- ③ 부동산의 수증은 대외교류팀에서 관장하고,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법인에 의뢰한다.<개정 2019.09.16., 2026.03.20.>
- ④ 수증한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참고한다.

#### 제7조 (영수증 발급)

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입금일 기준으로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#### 제8조 (기부자 관리)

- ① 기금관리부서는 기부자에 관한 정보와 기부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기부자에 관한 정보와 기부내용 등은 가급적 DB를 구축하여 전산관리하도록 한다.

#### 제9조 (회계처리)

모든 발전기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9.16.>

#### 제10조 (기부자 예우)

총장은 기금출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- ① 기념품 및 학교 홍보물 제공
- ②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
- ③ 본교 주요 행사 초청
- ④ 기금출연자의 이름 또는 인물동판을 새긴 조형물 설치
- ⑤ 기타 기금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등
- ⑥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.<신설 2019.09.16.>

#### 제11조 (제반경비)

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비로 충당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#### 제12조 (보칙)
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시행 이전까지 관리된 기금은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9.09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3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03.2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